

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

의안 번호	3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0. 6 .

발의자 : 한성환 의원 등 2명

1. 제안이유

제21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

2. 주요내용

- 출석일자 : 2022년 10월 18일 ~ 10월 25일(총 8일간)
- 출석대상 : 군수 및 「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 등
- 출석이유 : 제출된 안건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
 - ※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출석일자는 변경된 의사일정을 따름

3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
- 「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76조
- 「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관 계 법 규

○ 지방자치법

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○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회의 규칙

제76조(군수 등의 출석요구)

-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출석 및 답변하여야 하며,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 등에게 대리 출석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○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제2조(범위) 울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부군수
2.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·소장 및 실장·과장·단장급
3.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
4.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군 본청의 실장·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
5.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울주군 시설관리 공단의 이사장 및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
6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급 이상 임직원

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발의의원 서명서

[illegible]